

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」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기인의 인권 보호 강화와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경기부 설치, 선수단 구성과 이들의 업무를 명시함(안 제3조, 4조)

○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(훈련)환경 개선,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및 역할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(안 제5조)

○ 경기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6조)

- 우수선수 확보와 경기부의 훈련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 운영에 대해 명시함(안 제11조)
- 경기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경기인의 인권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, 증설, 또는 해체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, 운동경기부의 종목, 경기인의 정원 및 정년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단장과 코치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는 근무환경 개선, 경기력 향상, 고충 처리 등을 위해 “충청북도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”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폭력, 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을 예방, 사생활 보호, 휴식시간 및 휴가의 보장,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인권 보호 조치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음.
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경기인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9조에서는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에서는 동조 제1항에서 우수선수 영입과 훈련 편의를 위해 합숙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, 제2항과 제3항을 통해 선수들의 사생활 보호와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, 경기인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였음.
- 안 제13조에서는 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체육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,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는 기존 「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」으로 규정하던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써,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전반적으로 경기인의 권익 보호와 훈련 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 안 제6조 등을 통해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경기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며,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.